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윤영철 의원 외 8명

2. 제안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정질문의 의의(안 제72조의2제1항)
- 시정질문 방식 및 발언시간을 규정함(안 제72조의2제2항)
 - 1문1답식(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음)
 - 질문시간 : 30분(답변포함)
- 질문요지서 및 서면답변서 규정 조항 변경(안 제72조의2제3항)
 - 조의 변경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7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상적인 검토형 답변의 해소와 시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 시정질문의 의의를 규정(안 제72조의2제1항)하고,
- 시정질문 방식을 본 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72조의2제2항).

○ 검토결과

-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청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회의규칙이 개정 될 경우 본회의장 단상 발언대 교체 및 보조 발언대 설치 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